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제안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른 의무보험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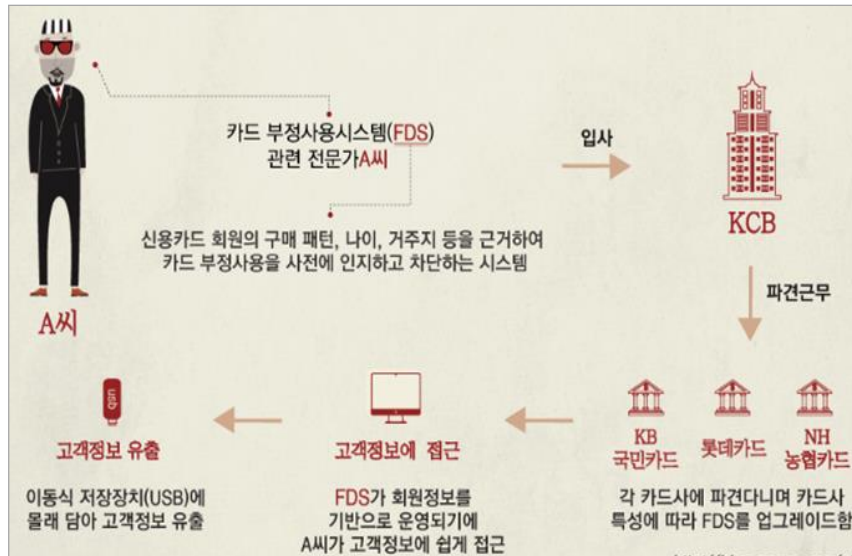
1. 국내 사고사례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4. 보험상품 안내
5. 보상 프로세스 및 보상사례

1. 국내 사고사례

주요사고 사례 1.

2014년 1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용역업체(KCB)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USB를 이용해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렸으며, 이 중 7,800만 건을 대출광고업자 조모 씨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고, 조씨는 이를 다시 대출업자 이모 씨에게 2,300만원 받고 넘김



항 목	내 용
유출된 고객정보 건수	총 10,400만건 (국민 5,300만건, 롯데 2,600만건, 농협 2,500만건) /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약 75% 추정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식별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신용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행정제재	CEO 해임,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00만원 처분
소송액(서울지법 기준)	787억 7,000만원(총 33건, 총 원고수 11만명)

1. 국내 사고사례

주요사고 사례 2.

2016년 5월 인터넷 쇼핑업체 개인정보 유출

- 해커가 인터넷 쇼핑업체 악성 이메일을 보내는 형태의 스피어피싱을 통해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이를 확산시켜 회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회원정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함
- 인터파크 측은 약 15일간 유출사실을 숨기고 정보보호 조치 및 책임 회피를 시도하여 현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임



항 목	내 용
유출된 고객정보 건수	총 2,500만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성명, ID, 비밀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행정제재	과징금 44.8억, 과태료 2,500만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소송액(서울지법 기준)	약 1,125억 예상(누출정보의 1.5% 소송 참여, 1인당 30만원 보상 時)

1. 국내 사고사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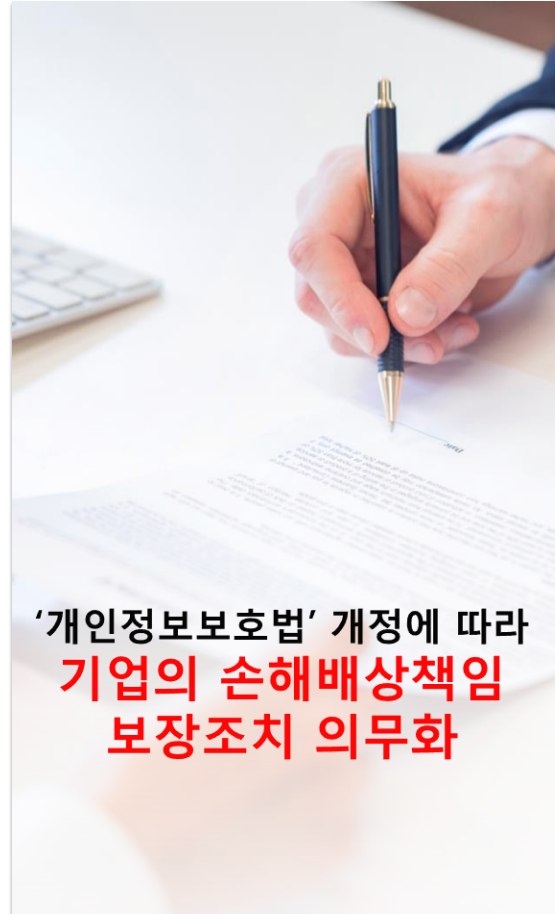
해킹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도 높은 수준임

일시	사업자	유출정보수	유출사유	현재 법률 환경 기준 1)추정손해액
2008년 01월	OO코리아	1,860만	해킹	850억
2011년 07월	OO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해킹	1,580억
2014년 01월	OO카드 3사	10,400만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	4,710억
2014년 07월	OO통신	1,170만	해킹	531억
2014년 09월	OO마트	250만	내부자의 불법행위	118억
2014년 10월	OO마트	310만	내부자의 불법행위	145억
2015년 11월	OO커뮤	195만	해킹	93억
2016년 03월	OO이노	324만	해킹	150억
2016년 05월	OO인터넷쇼핑	2,500만	해킹	1,125억
2016년 06월	O인터넷쇼핑	24건	홈페이지 개편 중 직원의 과실	1억 (비용손해)

1) 추정손해액 : 정보수 x 소송참여자 수 (1.5%) x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 (30만원) + 비용손해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1) 주요내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2) 관련 법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후략)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7. 24.]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2) 관련 법규

의무화 근거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의무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3) 의무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예시) ① LG유플러스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② '①'의 업체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대하여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지역케이블 TV업체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유선·무선·광선·그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예시) ① 온라인 쇼핑몰 ② 텔레마케팅 업체
③ 업종에 관계 없이 영리(수익 사업)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자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예시) ① LG유플러스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② '①'의 업체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대하여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지역케이블 TV업체 등)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3) 의무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1 매출액 기준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2 매출액 범위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

3 매출액 증빙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단, 재무제표 미확정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적용 가능)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_ 3) 의무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4 이용자수 산정 기준

-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경우

5 이용자수 의미

- ✓ 일일 방문자수나 서비스 이용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수 의미
 -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 무관함
 - 회원, 비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저장, 관리하고 있다면 이용자수에 포함
 - 탈퇴, 휴면 회원의 정보를 분리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수에 포함
 - 정보의 수집 경로(온·오프라인 여부 등)와 관계없이 저장, 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용자수에 포함
 - 동일인의 정보를 중복으로 저장하는 경우 중복을 제외하여 산정

6 이용자수 계산식

- ✓ 이용자수 일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Check Point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확인 :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저금액 상이

개인정보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기존보험 담보사항 확인, 신규가입 여부 결정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中 운용방법 선택

보험 가입 결정 시 보험사와 보험조건(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선택가입 사항 등) 협의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_ 1) 보험 최저가입금액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 구간 별로 차등 설정 : 최저 5천만원 ~ 최고 10억원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 최저가입금액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에 따른 한도금액이며, 계약자의 요청시 최저가입금액 이상 보험(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_ 2)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금 준비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내용을 포함·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유사 입법례

구분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신용정보법(제43조의3)				
가입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사 등				
목적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도입시기	2007. 7. 1		2015. 9. 12				
최저보험 가입금액	은행	시중은행 등	20억원	시중은행, 금융지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20억원		
		지방은행 등	10억원				
	증권, 금융투자		5억원				
	전자금융업		2억원			지방은행, 보험회사, 증권, 금융투자 등	10억원
	기타 금융회사		1억원			기타 (대부업 등)	5억원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_ 2)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유사 기존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본 보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담보범위가 확대됨

○ : 보장, X : 보장안함, △ : 조건부 보장

구분		기존 보험상품	의무보험 신상품	비고
배액배상금		X	○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개인정보	유출	○	○	
	분실	X	○	
	도난	X	○	
	위조	X	○	
	변조	X	○	
	훼손	X	○	
피보험자의 고의 (단, 직원의 고의는 담보)		△	△	피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가능

3. 의무가입 기업 검토사항 _ 3) 운용 방법

 의무가입 대상 기업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공제)가입 + 준비금 적립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보험(공제) 가입

보험(공제) 가입 시 매출액과 이용자수에 따른 최저가입 금액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조건(공제금액, 가입담보, 보험료, 선택특약 등)을 확인 후 가입해야 함

- 보험사
상품 안내

① 보험가입 의사 확인 및 상품 안내

- 기본정보 제공

② 매출액, 이용자 수 등 필수 확인 사항 확인

- 견적 산출 및
보험료 안내

③ 보험료 안내 및 청약서 교부

- 보험료 입금
및 증권 교부

④ 보험료 입금 후 보험개시 및 증권 교부

준비금* 적립 방법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준비금 :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

보험(공제) 가입 + 준비금 적립

보험(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가입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함

4. 보험상품 안내 _ 1) 상품 주요내용

 보험기간 및 보장지역 : 1년 / 대한민국

 보장내용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 분	보장명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방지경감비용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에 사용된 비용
	방어비용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의 고의 및 범죄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 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개인정보 이외의 유출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 해당 위험은 특약 가입 시 담보 가능)

*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상품 안내 _ 1) 상품 주요내용

 담보범위 확장을 원할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실행비용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
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으로 인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지급

[위기에 해당되는 사항]

- 피보험자가 공적 기관에 대하여서
문서에 의해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것
- *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그 외 유사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것

- ✓ 원인 조사 비용
- ✓ 사과문 작성 비용
- ✓ 신문, TV 사죄광고 게재 비용
- ✓ 기자회견 개최 필요 비용
- ✓ 위로금 및 위문품 비용 등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
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컨설팅 회사**가 그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지급
(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 보장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보
호법 제29조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
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하여 동법에 의거 **처**
분 받은 과징금을 보상

4. 보험상품 안내 _ 2) KB손해보험 상품

 KB손해보험은 대형계약자 사이버보험 운영 경험과 클레임 처리 경험이 다양합니다.

01 상품 운영

상품에 대한 풍부한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Risk Survey 경험
- ✓ 국내 대형계약자의 사이버패키지 보험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Know-how 축적

02 가입의 편리성

서류 작성 없이 가입이 간편하며, 자동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 가입질문서 작성 없이 "필수확인사항"만 체크하면 보험료 확인 가능
- ✓ 보상한도액 5천만원/1억원/2억원/5억원/10억원 에서 최대 50억까지 보험료 자동 산출

03 클레임 처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클레임 처리 경험이 다양합니다.

- ✓ 국내 TOP4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처리 경험
- ✓ 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법무법인 등 즉시 투입하여 처리 가능



4. 보험상품 안내 _ 2) KB손해보험 상품

보험가입시 필수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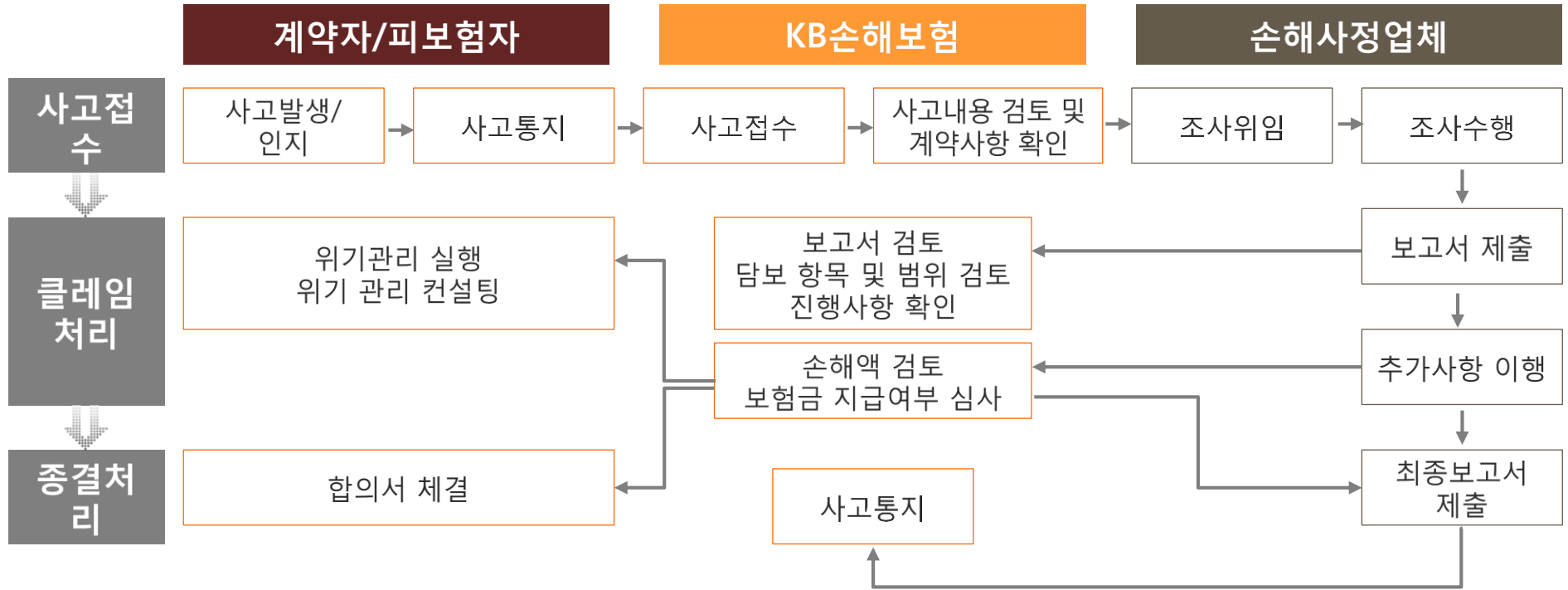
보험 인수여부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활용하는 요소로 아래 사항을 체크해주시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함

직전연도 총 매출액	원
직전연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일일평균 이용자수	명

	상세고지 질문사항	Y	N
1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규 또는 내부관리 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 데이터 보관장소인 서버의 접근을 ID와Password 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개인정보 서버에 접근 시 로그는 일정기간 보관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개인정보 서버 및 네트워크 사용기기(직원 PC, 노트북 등)에는 최신 바이러스 감염치료 소프트웨어가 적용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6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개별할인할증 적용 시 동일질문)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7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시 인수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세고지 질문사항	Y	N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 시 대응절차를 문서화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 위탁 시 재위탁 제한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상 명문화 하고 있습니까?(위탁하지 않을 경우 'Y'체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외부인의 사내 출입 시 신분을 증명하는 ID카드 (출입증)의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안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보상 프로세스 및 보상사례



- ✓ 원인 조사, 위기 관리, 법무법인, 광고 대행업체 등 분야별 업체들과 협정 체결 → 사고 발생시 즉시 투입 가능
-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송 발생시 소송 대리인 외에 사내 변호사 2명이 소송 관리 업무 수행

5. 보상 프로세스 및 보상사례

☑ 카드사 개인정보 누출사고

- 사고일 | 2014. 01. 13
- 사고원인 |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 사고내용 |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개발담당 책임자인 용역업체(KCB) 소속 직원이 USB를 이용해 카드사의 서버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약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렸으며, 대출광고업자인 조모씨에게 판매함.
- 보험금 | 18억원 +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40억까지 보상 예정)
- 손해사정 < 보험담보구간 >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책임
: 현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소송 진행 중임.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됨. 단, 판결 결과에 무관하게 소송방어 비용은 담보 함.
 - |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지급책임
: 피보험자가 컨설팅회사로 부터 위기관리서비스를 받지 않았음.
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음. 단, 컨설팅 회사로 부터 위기관리 서비스를 받았다면 비용 담보함.
 - | 위기관리 실행 비용 지급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발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해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관련 안내 및 사과문과 관련된 DM을 발송하여 비용이 발생되었음.
이는 특약에서 담보하는 바 보상한도액 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
- <손해액 산정>
 - | 방어비용 : 13억 (추산보험금)
 - | 위기관리 실행비용 : 5억 (실제손해액 약 11.2억 (보상한도 5억))



5. 보상 프로세스 및 보상사례

☑ 교육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누출사고

- 사고 일 | 2014. 06. 26
 - 사고원인 |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 사고내용 | 중국의 해커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피보험자가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180만 건의 회원정보를 타 교육업체에 판매하였고 타 교육업체에서 텔레마케팅 홍보에 활용함.
 - 보험금 | 약 1억 1천만원
 - 손해사정 < 보험담보구간 >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책임
: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점.
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음.
 - |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지급책임
: 피보험자가 컨설팅회사로 부터 위기관리서비스를 받지 않았음.
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음. 단, 컨설팅 회사로 부터 위기관리 서비스를 받았다면 비용 담보함
 - | 위기관리 실행 비용 지급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발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해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관련 안내 및 사과문과 관련된 DM을 발송하여 비용이 발생되었음.
이는 특약에서 담보하는 바 보상한도액 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
- <손해액 산정>**
- | 방어비용 : 13억 (추산보험금)
 - | 위기관리 실행비용 : 5억 (실제손해액 약 11.2억 (보상한도 5억))



꼭 알아야 할 사항

1.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본 상품은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본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분쟁조정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8.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 해당 상품은 기업성 보험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9.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에서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0.지급제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해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Kcic 한국기업보험센터 Korea Corporation Insurance Center	 CHUBB 에이스손해보험
 DB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MG손해보험		 SAMSUNG 삼성화재
 KB손해보험		 H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MERITZ 메리츠화재

Kcic

신 일 영
기업보험부 / 차장

M 010-9277-1025
T 02-6272-1025
F 0504-044-1025
E brian@kcic.co.kr

www.kcic.co.kr
한국기업보험센터 0780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에이스타워마곡(마곡동) 1302호

감사합니다